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219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예우 및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명예수당을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(안 제8조제1항제1호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5. 11. 6.~2025. 11. 26.(20일간)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17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임 애 경
	팀장 직위 · 성명	복지기획팀장 표 경 옥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안 학 열 (031-790-572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보훈명예수당 : 1인당 월 17만원	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 1. ---------- 20만원

【별지 서식】(제1면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3만원 인상(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보훈명예수당

- 2026년 3월부터 인상분 적용
- 2026년 총예산 : 8,658,000,000원
  · [(170,000원×3,700명×2월) + (200,000원×3,700명×10월)] = 8,658,000,000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보훈명예수당	8,658	8,880	8,880	8,880	8,880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시비 100%)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지자체 보훈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에서 제외

4. 작성자: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서원숙

【별지 서식】(제2면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					
보훈명예수당		8,658	8,880	8,880	8,880	8,880	44,178
재원 조달							
의존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수입	소 계	8,658	8,880	8,880	8,880	8,880	44,178
	지방세	4,329	4,440	4,440	4,440	4,440	22,089
	세외수입	4,329	4,440	4,440	4,440	4,440	22,089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24. 2. 13.] [법률 제20278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